

(재)한국정신문화재단 공고 제2024-53호

2024년도 소규모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 사업 공고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4조(사업) 4항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안동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에 의거하여, 사업수행을 위한 소규모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29.

재단법인 한국정신문화재단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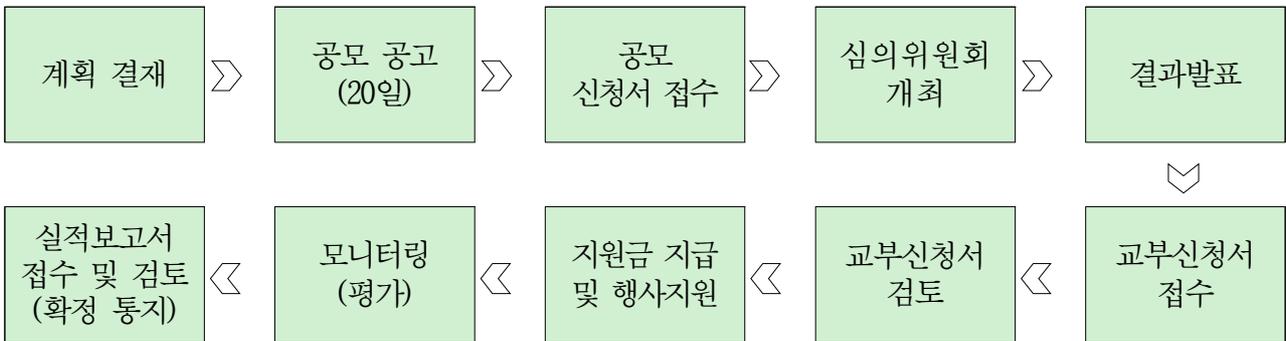
1 사업목적

- 소규모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 사업을 통해 소규모 동아리 및 동호회의 활동을 독려하고, 안동시 문화예술사업의 점진적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진행
-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문화예술인 역량강화 및 저변확대와 문화예술 향유를 통한 안동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2

사업개요

- 사업명: 소규모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
- 사업기간: 2024년 4월 ~ 12월
- 지원분야: 공연, 전시, 문학(출판)
- 지원규모: 단체별·분야별 사업계획에 따른 차등 지원(최대 500만원)
 - ※ 사업별 신청 및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른 분야별 지원금 조정 가능
- 사업절차



3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

구분		지원분야	지원규모	비고
소규모 문화예술 단체지원	공연	음악회, 콘서트, 버스킹, 풍물, 연극회,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등	각 사업별 최대 500만원	
	전시	미술, 서예, 공예, 사진 등		
	문학(출판)	문학(시, 소설, 수필 등) 작품 출판 등		

※ 지원대상과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4

신청자격 및 지원범위

□ 신청자격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 공고일 기준 안동시에 소재지를 두고 문화예술활동 등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안동시에서 최근 3년간 1회 이상 사업수행 실적이 있는 단체

❖ 지원 제외 대상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단체,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행사·사업
- 개인, 친목단체 등으로 민간단체로 볼 수 없는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 횡령 등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단체
- 2024년에 동일사업으로 다른 재원에서 이미 지원받은 경우나 지원받을 계획이 있는 경우
- 2023년도 동일 지원사업을 포기한 경우
-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원범위

- 지원은 사업비에 한함 ※ 단체 운영비 및 자본적 경비는 사용할 수 없음
- 본 공모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만 지원 가능하며,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원칙(심의 시 자부담률 반영)

5

추진일정 및 신청방법 안내

□ 추진일정

구분	일정	비고
공고기간	2024년 4월 29일(월) ~ 5월 19일(일) / 20일간	◦ 한국정신문화재단 누리집 참조
접수기간	2024년 5월 20일(월) ~ 5월 24일(금) 18:00까지	◦ 방문 접수
심의위원회 개최	2024년 5월 29일(수) 예정	◦ 심의위원 5명 정도
결과발표	2024년 5월 31일(금) 예정	◦ 한국정신문화재단 누리집 참조

※ 심의위원회 일정에 따라 발표 심사 및 결과발표일이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재)한국정신문화재단 문화사업팀(안동시 경동로 684, 구안동역)

방문 접수 ※ 우편접수 불가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 신청서 작성: 지원사업 신청서(붙임 서식)

- 첨부서류: 단체 고유번호증 사본,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요약서, 최근 3년간 문화예술활동 실적자료(붙임서식 참조) 및 증빙자료 제출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사업 및 첨부서류 누락 등 단체의 착오로 신청이 잘못되었을 때 별도 통보하지 않음

6

심의절차 및 심의기준

□ 심의절차

- 1차 심의(문화사업팀) - 적부 판단
 - 신청자격 및 지원목적 부합여부
 -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 부합여부
- 2차 심의(심의위원회) - 정량 및 정성 평가
 - 분야별 신청사업 검토 및 심의
 - 지원사업 및 지원금 결정 등

□ 심의기준

심의기준	심 의 내 용
창의성 및 독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의 창의성 ◦ 사업계획의 참신성, 독창성, 차별성 등 ◦ 지속적인 지원으로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을 보유한 단체 또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단체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과 사업목적의 타당성 ◦ 사업계획의 구현을 위한 사업 추진 전략의 적정성, 사업 활동의 구체성, 적합성, 실현가능성 ◦ 사업계획에 따른 지원금 신청액의 적정성 및 타당성
지역사회 기여도 및 파급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사업의 목표와 연계되어 기대되는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 욕구 충족도 ◦ 사업을 통해 유발되는 경제적 파급효과 등
공익활동 실적 및 자부담금의 부담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의 공익활동 실적 및 자부담금의 부담 능력 등

7

사업선정 결과 안내

- 선정결과 안내
 - 발 표 일: 2024. 5. 31.(금) 예정
 - 게 시 처: 한국정신문화재단 누리집(www.kfce.or.kr) 게시
 - ※ 심의위원회 일정에 따라 발표일이 변경될 수 있음

8

지원금 지급 및 사업 정산(평가)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교부신청 후 2주일 이내 전액(일괄) 지급
- 사업비(자부담금 포함) 집행 투명성 및 효율성을 위해 체크카드 사용
- 행사 완료 시 정산(실적)보고서 1개월 이내 제출 ※ 자부담금 포함
※ 반드시 2025. 1. 17.(금)까지 실적보고서 제출
- 중간점검 및 성과평가를 시행(필요시 현지조사 등)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사업에 반영할 예정임

9

기타 유의사항

-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여 지원사업 공모에 응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사업비를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관련법에 의거 형사 처벌 및 사업비 전액을 환수함
- 지원금의 지원대상, 대상사업, 제외대상, 지원범위, 심의위원회 의결 등 공고문 등 전반에 관한 해석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재)한국정신문화재단의 판단에 의함

- 사업계획은 예산편성기준에 적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편성원칙 및 집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시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 연도부터 지원을 제한하고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함
- 정산(실적)보고서 제출일까지 미제출 시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함

< 제출서류 안내 >

☆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요약

- ① 2024 소규모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 사업신청서 1부
- ② 사업신청서에 따른 사업계획 및 첨부서류(최근 3년간 1회 이상 실적 등) 각 1부
- ③ 고유번호증 또는 비영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출

↓ (행사지원 사업 선정 시)

☆ (교부신청 시) 제출서류 요약 - 선정단체를 대상으로 서식 별도 안내

1. 민간사업지원금 교부신청서 1부
2. 민간지원사업 실행계획서 1부
3. 민간지원사업자 관리카드 1부
4. 민간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1부
5. 고유번호증(사본) 1부
6. 통장(사본) 1부 - **자부담금 입금 후 통장(사본) 1부 제출**

< 문 의 >

- (재)한국정신문화재단 문화사업팀
- 054-857-8534